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03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부승찬 · 허 영 · 김한규
백혜련 · 박선원 · 윤준병
진선미 · 채현일 · 황명선
권칠승 · 김영환 · 김남근
안태준 · 안도걸 · 소병훈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영주권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금지 대상에 국외여행허가의

무 위반을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자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등).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3제1항 중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을 “제86조, 제87조제1항 및 제94조”로 한다.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중 “포함한다)”를 각각 “포함한다)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의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u>제86조 및 제87조제1항</u>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생략)</p> <p>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p>	<p>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① ----- ----- <u>제86조, 제87조제1항 및 제94조</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 ----- ----- ----- ----- ----- ----- ----- ----- <u>포함한다)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u>-----.</p> <p>② ----- ----- ----- ----- -----</p>

<p>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 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 지 아니한 사람을 <u>포함한다</u>)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 ----- ----- <u>포함한다</u>)과 <u>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u> <u>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u>---</p>
---	--